

## 연구우수교수(Advanced Research Professor)임명 및처우에관한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가천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 연구우수교수(Advanced Research Professor, ARP)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연구우수교수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연구활동으로 본교의 연구량 향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교원으로서 연구우수교수후보추천위원회(이하 '추천위원회'라 한다)에서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자격)** 연구우수교수는 임명일자를 기준으로 재직기간 6년 이상인 정년 트랙 전임교원 또는 특별 임용된 교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국내·외적으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은 저명한 학자이거나 우수교수로서 발전가능성이 높은 자로 한다.

**제4조(추천 및 임명)** ①연구우수교수는 추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에게 임명을 추천한다.

②연구우수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심사 및 평가에 의해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재임명할 수 있다.

③총장은 추천된 임명대상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간 및 예우를 정하여 임명한다.

**제5조(추천위원회)** ①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부총장(위원장), 의무부총장, 기획부총장, (삭제 2019.02.21.)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연구처장

2. 임명직 위원 : 총장이 추천하는 인문사회계열 교수 1명, 이공계 교수 1명, 의학계 교수 1명으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

②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후보자 선정기준과 절차

2. 후보자 심사 및 추천

3. 임명기간 및 처우에 관한 사항

③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

3-2-35~2 제3편 행 정

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정한다.

④후보자 선정 기준과 절차는 따로 정한다.

**제7조(처우)** ①연구우수교수의 처우는 개인별로 차등으로 적용할 수 있다.

②연구우수교수로 임명된 교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직하거나 징계 등으로 연구우수교수 임기를 중단해야할 경우 교무처장은 연구우수교수 임명기간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 추천위원회의 회의 또는 서면에 의한 심의를 마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8조(재원)** 연구우수교수 지원을 위한 재원은 교비로 편성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9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